

2025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□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집행액	집행내역
	세부사업	통계목		
도시철도 토목부	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 손해배상	배상금 등	62,05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 출 일: '25.07.16.○ 지급대상: 이춘호○ 지급사유: 상고기각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- 『서울지하철 7호선 7-23공구 건설공사』 소송 판결금 지급
 - 서울지하철 7호선 대림역 인근 개인 사유지에 지하철 공사에 사용된 토류벽 일부 점용으로 토지주의 토지사용 및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
 - 화해권고 결정 및 1, 2심 소송이 진행되며 판결금이 점차 감소하였으며, 3심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쌍방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됨
 - 상고기각에 따라 2심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 미지급시 자연손해금(연 12%)이 가산되므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

붙임 1. 서울지하철 7호선 7-23공구 건설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1부.

서울지하철 7호선 7-23공구 건설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

□ 공사개요

- 위치 : 동작구 대방동 조흥은행 앞 ~ 구로구 구로4동 769번지
- 사업기간 : '93. 11. 27. ~ '00. 11. 30.
- 총 연 장 : 3.40km
- 계약금액 : 123,117백만원
- 계약업체 : 풍림산업(주) 50%+삼환기업(주) 50%
- 감 리 사 : (주)제일엔지니어링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대법원 2025다210449 손해배상(건)
- 당사자
 - 원고 : 이춘호
 - 피고 : 서울특별시
- 소송가액 : 200,039천원
- 사건개요
 - 서울 지하철 7호선 대림역 9번 출입구 인근 대림동 1050-40번지 토지($599m^2$)에 원고가 건물(지하 3층, 지상 10층)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공사에 사용된 지하 구조물(토류벽) 발견
 - 상기 구조물의 침범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건물 지하 1, 2, 3층 건축면적(연면적 $30m^2$)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침범한 토지($10m^2$)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임료 상당 청구

□ 추진 경위

- '20. 1. 17. : 소장 접수
- ~ '23. 6. : 감정평가 및 변론실시(5회)
- '23. 6. 27. : 화해권고 결정
 - 피고는 원고에게 170백만원을 지급한다.
- '23. 7. 12. :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(서울시)
- '23. 8. 18. : 1심 판결선고
 - 피고는 원고에게 81백만원을 지급한다.
- '23. 9. 14. : 2심 항소
- '25. 1. 23. : 2심 판결선고

【2심 판결결과】

- 주 문
 - 피고는 원고에게 57,241,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7.12.부터 2025.1.23. 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 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 - 소송총비용 중 3/4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- '25. 2. 17. : 3심 상고
- '25. 6. 11. : 소송 종결통보(법률지원담당관)
 - 결 과 : 쌍방심리불속행기각
※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받고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
- '25. 7. 7. : 예비비 사용 계획 방침 수립
- '25. 7. 10. : 예비비 사용 승인 알림(예산담당관→도청토목부)
- '25. 7. 11. : 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(도청토목부→총무부) ※ 지급일 : '25. 7. 16.

□ 판결금 지급현황

- 지급금액 : 62,053,256원